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○ 부채비율 조기 축소에 대한 현실성 논란

-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%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함
 -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
 -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도록 자극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자 함
- 부채비율 축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, 단기적인 해결에는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
 - 부채비율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총 60조 원(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0%)이 필요함
 -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, 중시를 통한 자금 조달,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매각, 부실 기업의 정리나 매각 등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
 -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, 투자 위축에 의한 실물 경제의 교란, 대규모 실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
- 경제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의 형편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
 - 종합상사(수출입금융), 장치산업 등 부채비율이 일정 기간 높게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이나 실행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

○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강화

- 정부는 WTO 출범, OECD 가입, IMF 체제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,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할 예정임
 -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자체 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임
 -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국내의 외국인 子회사뿐 아니라 본국의 母회사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域外適用 방안을 마련하되,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적용을 강화할 방침임
-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정책이 투자 촉진, 외환 유입을 위한 '당근' 위주인 반면, 이번 방침은 기업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'채찍'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
 - 일부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외국인 기업을 지나치게 우대하는

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, 이른바 '역차별'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

- 이를 불식시키고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, 쌍무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- 경쟁 정책(공정거래 정책)의 역외 적용은 국제적으로 뚜렷한 합의 사항이 없으므로, 향후의 논의 전선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을 해도 무방할 듯함
- 따라서 현시점에서는,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, 각종 규제가 풀린 외국인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해야 함

○ 외환 관리와 외국인투자 제도 개편: 자유화, 개방화, 事前管理 축소, 事後管理 강화

- 제도 개편의 원칙은 일부 예외적인 규제를 존속하되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하고, 사전 관리는 최소화하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
- 외환관리 제도 개편 방안
 - 경상 거래의 전면 자유화, 자본 거래의 원칙적 자유화: 국가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 규제
 -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: 비정상적 해외여행 경비, 중여성 송금,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해외 자본 도피와 국제 자금 세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사후관리 체계 강화: 외환 관련 보고 책임과 위반時 대한 제재 규정 마련, 외환 관리시스템 및 조기 경보체계 구축
 - 외환시장 안전장치 제도화: 외환 거래의 잠정적 정지 제도 마련, 과도한 투기성 단기 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가변예치제, 외환거래세 등 도입
 - 금융 기관의 외화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
- 외국인투자 제도 개편 방안
 - 외국인투자 전면 자유화: 국방, 방송, 통신, 해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 개방, 외국인 토지 취득과 M&A 전면 허용
 - 투자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: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, 자동 승인제 도입
 -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확충: 외국인투자지원위원회 설치(재경부 차관이 위원장), 조세감면 대상 확대, 조세 감면 기간 연장(8년→10년), 외국인 투자 기금 조성, 지자체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자유 지역 설정
- 향후 추진 일정
 -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, 실무작업단, 자문그룹 등 구성 → 공청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4월중 개정안을 마련 → 상반기내 입법 → 외환전산기획단을 구성하여 시행 준비 →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조기에 시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완비된 후 전면적인 시행 (정 반석 bsjoung@hri.co.kr ☎ 724-4045)